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 20.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월 15일 박남오 의원 외 7인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월 1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9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0년 1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남오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99. 8. 31. 법률 제6002호)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6772호('99. 12. 31.)로 개정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2000. 1. 8.)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함(안 제1조)
 - 제2조의 ①항중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함(안 제2조)
 - 제3조는 회기수당을 1일에 “70,000원”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함(안 제3조)
 - 제7조의 ②항의 <별표2>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99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의 1일 금액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며 여비지급기준 중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내용과 또한 부칙에 동 조례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위원회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정리하여 입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발의년월일 : 2000. 1. 15.

발 의 자 : 박남오의원외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99. 8. 31. 법률 제6002호)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772호('99. 12. 31.)로 개정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2000. 1. 8.)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함(안 제1조)
- 제2조의 ①항중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함(안 제2조)
- 제3조는 회기수당을 1일에 “70,000원”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함(안 제3조)
- 제7조의 ②항의 <별표2>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공무원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다. 조 례 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 ①항중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7조 ②항 <별표2>중 일비란 및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 비	숙 박 비
의 장 부의장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의 원	가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30	나등급 86
	다등급 30	다등급 64
	라등급 30	라등급 56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4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조(목적) <u>회의수당 및</u>	제1조(목적) <u>회기수당 및</u>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u>월 350,000원으로</u>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u>월 550,000원으로</u>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제2항의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회기수당은 회기이루어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2> (단위 : \$) <table><tr><th>구분</th><th>일비(1인당)</th><th>숙박비(1야당)</th></tr><tr><td rowspan="4">의장 부의장</td><td>가등급 25</td><td>가등급 137</td></tr><tr><td>나등급 25</td><td>나등급 99</td></tr><tr><td>다등급 25</td><td>다등급 76</td></tr><tr><td>라등급 25</td><td>라등급 65</td></tr><tr><td rowspan="4">의원</td><td>가등급 20</td><td>가등급 120</td></tr><tr><td>나등급 20</td><td>나등급 78</td></tr><tr><td>다등급 20</td><td>다등급 58</td></tr><tr><td>라등급 20</td><td>라등급 51</td></tr></table>		구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25	나등급 99	다등급 25	다등급 76	라등급 25	라등급 65	의원	가등급 20	가등급 120	나등급 20	나등급 78	다등급 20	다등급 58	라등급 20	라등급 51
구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25	나등급 99																				
	다등급 25	다등급 76																				
	라등급 25	라등급 65																				
의원	가등급 20	가등급 120																				
	나등급 20	나등급 78																				
	다등급 20	다등급 58																				
	라등급 20	라등급 51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2> (단위 : \$) <table><tr><th>구분</th><th>일비(1인당)</th><th>숙박비(1야당)</th></tr><tr><td rowspan="4">의장 부의장</td><td>가등급 35</td><td>가등급 151</td></tr><tr><td>나등급 35</td><td>나등급 109</td></tr><tr><td>다등급 35</td><td>다등급 84</td></tr><tr><td>라등급 35</td><td>라등급 72</td></tr><tr><td rowspan="4">의원</td><td>가등급 30</td><td>가등급 132</td></tr><tr><td>나등급 30</td><td>나등급 86</td></tr><tr><td>다등급 30</td><td>다등급 64</td></tr><tr><td>라등급 30</td><td>라등급 56</td></tr></table>		구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의원	가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30	나등급 86	다등급 30	다등급 64	라등급 30	라등급 56
구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의원	가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30	나등급 86																				
	다등급 30	다등급 64																				
	라등급 30	라등급 56																				